

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연구센터”란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특정사업 또는 특정과제를 해당 사업기간 또는 과제기간 동안 수행하는 연구조직 및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)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1. 외부연구비 지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특정사업 또는 특정과제를 해당 사업기간 또는 과제기간 동안 수행하는 경우

제4조(설치절차) ① 연구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센터의 명칭, 목적 및 필요성, 참여교원의 연구실적, 재원조달계획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설립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센터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한다.

제5조(자격 및 임명) ① 센터장은 본교 교원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조직) ① 연구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, 사업비 항목에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괄한다.

제7조(사업시행) ① 연구센터는 자체사업계획서 및 실행예산서에 입각하여 사업을 진행하며, 산학협력단은 재정, 시설, 공간 및 인원을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. 다만,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다.

② 연구센터는 외부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의뢰받은 특정사업 또는 특정과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특정사업 또는 특정과제 수행 중 연구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변상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.

④ 연구센터의 보유장비는 사업종료 후 산학협력단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재정) ①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와 같다.

② 연구센터의 운영경비는 특정사업 또는 특정과제 수입금, 그 밖의 보조금 및 기

부금 등으로 자체 조달하여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산학협력단은 연구센터가 외부로부터 수혜 받은 사업비 중에서 일정율의 간접비를 간접비 관리지침에 의거 징수한다.

제9조(평가)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센터의 설치목적, 사업(연구)활동, 재원조달 및 자립능력 등 운영성과와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.

제10조(통합 및 폐지) ① 제9조(평가)에 의한 평가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설치 목적에 크게 위반되는 경우가 있을시 연구센터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연구센터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잔여 업무를 산학협력단에 이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